2007. 11. 23(금) 10:00
1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목　　차】

1.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3.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 ……10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6일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07년 11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1월 15일(제1차 총무위원회)
마. 의안번호 : 제2007 - 40호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06. 12. 30) 및 공유재산관리기준(행정자치부, 2007. 3. 9)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일치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삭제(안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나. 제32조 중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로 변경(안 제32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혼돈을 방지하기 위함
다. 제39조제1항 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변경(안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변경

라.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및 매각기준 명시(안 제40조).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사유건물에 대하여는「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제한
-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
-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음.
- 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마. 분수림을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7조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삭제(안 제44조)

바.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3배 증액(안 제64조)

- 총보상금 : 1,000만원 → 3,000만원
- 필지별 보상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06. 12. 30)되고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07. 3. 9)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조문 정비와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증액 등 공유재산의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6일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7년 11월 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1월 15일(제1차 총무위원회)

마. 의안번호 : 제2007 - 55호

2. 제안이유

○ 주요 군정의 일상적 홍보와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도 확대 및 이해도 증진으로 군정 추진 동력 제고

○ 주상면민의 이용이 편리하게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지소의 접근성 필요 깨끗하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와 병행 산만한 소재지 정비필요

○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및 가축 분뇨로 인한 가축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취득

○ 보건소 방문 민원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등 진료환경개선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물이 협소 및 노후로 벽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보건지소 이전 신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명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물건및지목	수량(㎡)	예정금액	비고
전광 스크린	공작물	거창읍 상림리 64-1		1	670,000	
주상면행정타	토지	주상면 도평리 718	토지	2,772	380,000	
운설치	건물	외 4필지	건물	847	1,360,00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토지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3번지 외 7필지	토지	10,080	200,000	
보건소 주차장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부지	토지	거창읍 송정리 29-1 번지 외 5필지	토지	2,110	1,300,000	
소 계				**670**	**1,105,216**	
주상보건지소		주상면 도평리 718번지 외 4필지	건물	335	527,608	토 지 (주상면 행정타운과 연계)
신원보건지소		신원면 과정리 산72 번지	건물	335	577,608	토지 (거창군)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물건및 지목	수량(㎡)	예정금액	비 고
		해	당	없	음	

4.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전광스크린 설치(공작물)

○ 전광스크린 설치사업은 가로 8m, 세로 6m 크기의 규격으로 설치하여 주요군정의 일상적 홍보와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 군의 중심지역인 로터리 일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군청사 동쪽 상단 벽면에 총사업비 670,000천원을 들여 설치, 활용하려는 계획안이 되겠음.

○ 본 사업의 총 사업비가 670,000천원인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60호, 2007. 10. 5)에 의하면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1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670,000천원의 예정금액을 결정하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인지 또는 견적가격에 대한 예정가격인지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 전광스크린 설치 후 **실시간으로 매일 군정을 홍보할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

○ 현 주상면사무소는 1988년 건립되어 20년 정도된 건물로서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은 주상면 도평리 718번지 외 4필지에 부지면적 2,772㎡, 건물면적 847㎡로 총사업비 1,740,000천원 중 토지매입비 380,000천원, 건물신축비 1,360,000천원으로 면사무소(1층), 복지회관(2층)을 통합적으로 한곳에 설치하는 행정복합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연계하여 보건지소도 해당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금번 토지취득재산 소요예산을 380,000천원 정도로 예상하였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격이 116,800천원이며, 당해 재산의 채무액이 북부농협에 104,000천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의 적정성, 취득 재산의 매수 가능 여부와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취득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매입 사업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및 가축분뇨로 인한 가축사육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대상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263번지 외 7필지, 10,080㎡에 현재 건설 추진 중인 2차 폐기물매립장 위쪽으로 총 소요사업비 150억원(국비120, 기금18, 군비12)을 투자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 본 사업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주민 기피로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였고 또한 가축분뇨는 오염 농도가 높아 완벽한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연계 처리가 가능한 곳을 선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 **취득재산의 공시지가는 22,790천원이며, 매수 예정금액은 2억원으로 이에 대한 매수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보건소 주차장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

○ 현 거창군 보건소는 1997년 신축 이전하여 12면의 주차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장 1일 이용자가 보통167명 정도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정신보건사업 시설(정신보건센터, 재활치료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9-1번지외 5필지 취득대상 재산 예정금액은 총 소요사업비 13억원이며, 그 중 토지 6필지 2,110㎡에 880,000천원, 물건(창고) 800㎡에 120,000천원, 철거비 100,000천원, 주차장 조성 및 기타조성비 200,000천원으로 전액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 당해 재산의 채무액이 3억 3천 8백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재산의 매수가능 여부와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 현 **주상면 보건지소**는 1987년 건립되어 20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상면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 주상면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27,608천원 중 이전건축비 477,608천원(국비 318,405천원, 도비 159,203천원)은 확보[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과-34379('07.10.17) 지원 대상기관 확정 선정 통보]되었으며, 군비(냉난방시설 등 기타 부대사업비) 50,000천원을 '0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됨.

◆ 신원면 보건지소 신축

○ 현 **신원면 보건지소**는 1986년 건립되어 21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 위치 부지를 확장하여 주차·대기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35㎡ 정도로 확장·신축하려는 것으로서

○ 총 소요사업비 577,608천원 중 건축비 477,608천원(국비 318,405천원, 도비 159,203천원)은 확보[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과-34379('07.10.17)지원 대상기관 확정 선정 통보]되었으며, 군비(기반조성비, 냉난방시설 등 기타 부대사업비) 100,000천원을 '0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과 주차·대기 공간 등의 개선으로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전광스크린 설치(공작물) : 부결

- 사유 : 설치위치 부적절 및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 가치가 있는지 향후 시대변화를 보면서 재검토

○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 : 부결

- 사유 :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며, 지역균형 발전에 맞는 장소를 재선정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취득 : 원안가결

○ 보건소 주차장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 : 원안가결

○ 주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 부결

- 사유 : 주상면 행정복합타운 장소 재선정에 따라

○ 신원면 보건지소 신축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6일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07년 11월 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1월 15일(제1차 총무위원회)

마. 의안번호 : 제2007 - 56호

2. 제안이유

2007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거창군 삶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합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군 삶의 쉼터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 외 8필지

다. 규　모 : 연건평 4,977㎡(지상1층, 지상3층)

○ 노인·여성복지회관 : 1동 3,009㎡

○ 장애인복지관 : 1동 1,968㎡

라. 주요시설

○ 노인시설 : 사무실, 홀, 강당, 체력단련실, 생활건강상담실, 건강교실, 소강당, 주간보호센터, 노래연습장, 휴게실 등

○ 여성시설 : 여성상담실, 취미교실 , 요리교실, 자원봉사실, 어린이놀이방 등

○ 장애시설 : 사무실, 체력단련실, 수치료실, 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자원봉사실 등

마. 위탁대상 업무

○ 삶의 쉼터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관리

○ 노인·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바. 위탁기간 : 5년 이내

사. 조직 및 직제

○ 수탁운영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편성하여 운영

○ 시설운영 초기(개관시) 최소인원 운영

○ 향후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추이 등을 감안 인력 조정 운영

아. 소요예산

○ 개관시(10명 기준) 388,372천원(도비 46,000, 군비 342,372)편성

4. 검토보고 요지

○ 금번 제출된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서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 본 건은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복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